

#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폐지사유

- 종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, 동법 설치 근거가 삭제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었음.

## 주요골자

## 폐지근거

-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
-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

## 조 례 안 : 불입

##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입

#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168호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